

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 재발급신청서

※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60일
신청인	기관·단체명	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법인등록번호	
	소재지	전화번호	
	대표자 성명	전화번호	
	담당자 성명 및 직위	전화번호	
신청 사유	[] 분실 [] 훼손 [] 변경		
변경 사유			
변경 사항	변경 전	변경 후	

「진로교육법 시행규칙」 제5조에 따라 교육기부 진로체험기관 인증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교육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1. 인증서 원본 1부(인증서를 잃어버린 경우는 제출하지 않습니다) 2. 재발급 신청 사유를 증명하는 모든 서류	수수료 없음
------	---	-----------

